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공2013하, 1721]

판 시 사 항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 수령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이유로 재산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것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 결 요 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참 조 조 문

민법 제741조,제746조,제750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3021 판결

전 문

【원고,상고인】 탐진최씨중서령공신평파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울 담당변호사 양△관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유)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3.4.17. 선고 2012나2376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 제103조 등과 표리를 이루어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불법성을 주장하여서 법의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일반적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념은 법적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가급적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에서 종전에 대법원은 1979.11.13. 선고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이래로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하여 부동산의 양도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 그 양도행위의 무효로 급여자가 그대로 가지게 되는 원래의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을 부인하고, 나아가서는 급여수령자가 소유권 자체를 취득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렇다면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 수령자가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는 등으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급여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 재산의 급여로 말미암아 발생한 자신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급여자의 위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다면, 이는 급여자는 결국 자신이 행한 급부 자체 또는 그 경제적 동일물을 환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에서 실정법적으로 구체화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법이념에 반하게 되는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기초자치단체의 의원으로서 관할 등기소에 청탁하여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가 경정되도록 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총무 등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 총무 등의 위와 같은 금전지급행위는 원고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어야 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인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또한 원심은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 총무 등의 금전횡령행위에 관하여 원고총무 등과 연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앞의 1.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위 1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없고,이와 달리 볼 사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결국 원심의 판시에는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4.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영한(재판장) 양창수(주심) 박병대 김창석